

강 령

더불어
민주연합

0 전문

선진국으로 도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여전히 어려운 도전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한반도 전쟁 위협, 저출생, 기후위기 등이 그것이다. 우리 미래를 위협하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일방통행 및 내로남불식 국정운영, 검찰출신 인사 주요요직 배치, 부자감세와 서민부담 증가, 언론 장악 시도 등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 오히려 총체적인 후퇴만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무능·무도·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에게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1 정치

극단주의를 배격하고 대화, 타협,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개인의 정치적 신념과 가치가 존중받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 정치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시민들의 사상, 표현, 언론에 대한 자유를 강화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한다.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권력에 대한 실질적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도록 국회 역할을 강화하여,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한다.

성, 연령, 지역,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정치참여가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

여성, 청년, 취약계층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활성화 되도록 한다.

언론 및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2 경제

글로벌 대전환시기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사회전반에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과 갈등을 해소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상생과 협력을 촉진한다.

녹색·디지털 산업전환 및 신산업 육성, 산업구조를 고도화 한다.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한 창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과학기술 발전 혁신기반 구축 등 과학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경제·산업구조 대전환에 제대로 대응하고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주거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 안정화, 공공주택 확대 등의 주거정책을 바탕으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한다.

사회구성원의 이익과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순환 생태계 기반 마련 등 사회적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농축수산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식

량자급 및 기후위기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체계 마련 등 농축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3 재정

고물가, 저성장 등 경제위기 속에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재정을 실현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하에 탈세와 세금 탈루를 막고, 성실납세자를 보호한다.

경제위기 극복 및 경제성장률 제고 등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확장재정을 추진한다.

위기에 처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세수결손 및 복지재원 마련, 기후위기 및 인구위기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4 저출생

출산과 양육 중심의 저출생 문제 해결방식에서 국가책임 및 삶의 질 제고와 성평등 강화 관점에서의 해결방식 변화를 통해 가족이 행복한 사회,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일·돌봄·개인의 삶에 대한 균형 보장,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전폭적 지원 등 국가와 가족이 함께하는 돌봄사회를 만든다.

다양한 가구특성별 지원 확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다양

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초등돌봄 보편화, 일과 생활의 조화와 성평등한 노동권 보장을 통해 돌보고, 돌봄 받을 시간을 보장하는 사회를 구축한다.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5 복지

불평등과 격차의 축소 및 완화와 함께 소득, 건강, 노후에 대한 기본생활을 보장하여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성, 연령, 장애, 인종 등에 따른 차별로부터 소수자를 보호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및 권리보장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처분가능 소득을 향상하여 최상위층과의 격차를 축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방 보건의료인력, 기반시설 강화 등으로 계층, 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건강인프라 격차를 완화한다.

지역별,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이 기후위기에 빠르게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 위험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소득수준 최상위층의 세부담을 적절히 높임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6 기후 · 에너지 · 환경

전세계적인 흐름인 기후변화 대응 흐름에 발맞춰 녹색산업 육성 및 전환 등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한다.

원자력 및 화석연료의 사용은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시장 창출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추구한다.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더 취약하거나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계층, 지역과 산업에 대해 국가가 선제적으로 대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7 일자리 · 노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헌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구축한다. 또한 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정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촉진하고,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한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법·제도·정책을 강화한다.

노동현장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이 적용되도록 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타파하여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한다.

연령·성·장애 등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급변하는 경제·산업구조에 대응한 직업훈련과 전직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한다.

적정임금 보장 방안 모색, 체계적인 고용안전망 구축, 근로자 대표 및 노동조합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노동자를 위한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마련한다.

8 외교 · 안보 · 통일

미중 전략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착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외교안보 위기를 타개하고 국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한다.

포괄적 군비통제 관점에서 위기관리 및 충돌위험 해소, 긴장완화 및 평화구축 도모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미중 경쟁 등 복잡한 국제경쟁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응하여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신기술과 경제 그리고 문화 영역 등에서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한다.

개방적 통상, 포용적 외교, 글로벌 공급망 회복과 다변화 도모 등을 통해 경제안보를 강화한다.

9 교육 · 문화

교육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교육정책을 실현한다. 생애주기형 맞춤형 교육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를 만든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다.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공교육을 중심으로 한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교육과 책임교육을 실현한다.

급변하는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을 대전환한다. 산학협력을 비롯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지방소멸에 대비한다.

성·연령·장애여부·지역 등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한다.

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역의 문화 격차 해소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10 균형발전

저출생과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기술변화와 기후위기 등 새로운 시대적 변화 흐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한다.

각각의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강화하고 지역별 상생과 협력을 추구할 수 있는 지역정책을 실시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어디에 거주하든 차별 없이 교육, 문화, 의료, 교통, 통신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도시재생을 비롯하여 미래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한다.

당 헌

2024. 3. 3.

더불어
민주연합

당 헌

【 2024년 3월 3일 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당의 명칭은 ‘더불어민주연합’으로 하고, 약칭은 ‘더민주연합’으로 한다.

제2조(목적) 이 당헌은 우리 당의 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한다.

제3조(구성 및 조직과 운영) ①더불어민주연합은 중앙당, 시·도당으로 구성된다. 다만, 각급 공직선거 시 당해 선거구에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중앙당은 수도에 두고, 각 시·도당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둔다.

③더불어민주연합은 당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민주·개혁·진보 시민의 폭넓은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

④더불어민주연합은 당원과 지지자를 포함한 시민 플랫폼 정당을 지향한다.

제2장 당원

제4조(당원) ①법령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당원은 입당원서를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여 입당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

- ③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제명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④권리당원과 일반당원의 구분은 당비납부 여부에 따라 당규로 정한다.
- 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권리당원이 아닌 당원에게 권리당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⑥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당원의 권리·의무) ①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1. 선거권
- 2. 피선거권
- 3.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4.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5.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6.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 7. 그 외 당헌 및 당규에서 보장하는 권리

②제1항 중 제2호, 제4호는 권리당원에 한한다.

③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 3. 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 4. 윤리규범을 지킬 의무
- 5.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 6. 당규로 정하는 당비를 납부할 의무, 이 경우 권리당원에게만 해당한다.

④제3항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 제1항 각 호의 권리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⑤당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입당이 확정되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로부터 발생하고, 탈당신고서가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로부터 소멸한다.

제6조(제명·탈당자의 복당) ①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자(탈당권유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복당할 수 없다. 다만,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탈당한 자가 복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에 복당원서

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자격심사) ①시·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신청인의 입당원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시·도당 사무처장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없이 7일 이내에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때에는 입당된 것으로 본다.

②사무총장이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추천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한 자는 시·도당의 당원자격심사에도 불구하고 입당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당원명부에 즉시 등재하여야 한다.

③본조 제1항에 따라 입당이 허가된 경우라도 입당신청자의 자격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비당원 판정을 할 수 있다.

제8조(심사기준) 당원자격심사는 당헌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요건과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한다.

1. 법령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는 자
2.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자
3. 당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4. 사회상규에 따른 도덕성에 어긋남이 없는 자
4.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5.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

제9조(이의신청) ①시·도당이 입당신청인의 입당원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입당원서 접수 후 30일이 지나도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당신청인이 중앙당에 입당원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중앙당에 입당원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당원서 접수가 거부된 날, 입당불허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입당원서 접수 후 3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적부를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도당 및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원자격이 있다고 심사·결정한 경우 입당의 효

력은 중앙당에 입당원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⑤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입당이 불허된 자는 입당 불허 의결일로부터 1년간 복당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입당확정) 중앙당 사무총장 혹은 시·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이 확정된 당원에 대해 당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탈당) ①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탈당신고서를 접수한 시·도당은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하게 한다.

④중앙당 및 시·도당은 탈당신고서를 제출한 당원에게 탈당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입당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당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사무총장,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위원 2명, 당대표가 추천하는 위원 2명 등 총 5인으로 구성하며 중앙당 조직국장을 간사로 한다.

③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시·도당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시·도당위원장, 시·도당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4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하고, 시·도당 사무처장을 간사로 한다.

제13조(당비) ①당원은 당비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비 납부를 하지 아니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가 제한 될 수 있다.

③당비의 납부기준금액과 납부절차, 당비 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4조(상벌) ①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②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 등에 대하여는 제명, 당원권 정지, 경고 등 징계 할 수 있다. 단, 당원에 대한 제명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3장 당 조직

제1절 당대회

제15조(구성) ①당대회 대의원은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

②당대회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및 당대회 의장·부의장
2. 최고위원
3. 상임고문
4.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5. 중앙당 상설위원장
6. 전직 국회의원 및 전직 광역·기초단체장으로서 당원인 자
7.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8. 정책연구원장, 부원장, 연구위원
9.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당원
10. 시·도당대회에서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당원

③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정기 당대회가 2년 이내에 실시 될 경우, 차기 당대회 개최일까지로 한다.

④당대회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6조(지위와 권한) ①당대회는 다음의 지위를 가진다.

1. 당 강령의 채택과 개정
2. 당헌의 제정과 개정

3.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
4. 대통령후보자 · 당대표 · 최고위원의 선출
5. 기타 주요 안건의 의결 및 승인

②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제1항제4호를 제외한 당대회의 권한을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소집) ①정기당대회는 2년마다 당대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당대회 개최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

②임시당대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회 의장이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의장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이 모두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대표가 소집한다.

④당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8조(당대회 의장단) ①당대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당대회 의장은 당대회 대의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의장은 선출된 의장이 대의원 중에 지명한다.

③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과 지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9조(의결) ①당대회의 안건은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의 의결은 정당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③제1항의 의결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행할 수 없다.

제2절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제20조(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①당대표는 법적 ·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

를 통할한다.

②당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2. 주요 당직자의 추천 및 임면
3. 당무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4. 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5.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하는 권한

제21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①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은 당대회에 통합선거로 선출한다.

②제1항의 당대회 통합선거 결과, 최다득표자가 당대표가 되고 2위부터 5위까지의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된다. 다만, 5위 득표자 이내에 여성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5위 득표자 대신 여성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

③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2조(임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3조(당대표의 궐위) ①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제21조 제1항에 의해 선출된 최고위원 중 다득표자 순으로 당대표직을 승계한다.

②승계한 당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4조(직무대행) 당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1조 제1항에 의해 선출된 최고위원 중 다득표자 순으로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선출직 최고위원의 궐위) 제21조 제1항에 의해 선출된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후임자를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된 최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3절 최고위원회(간부회의)

제26조(지위와 구성) ①최고위원회는 당무전반에 관한 최고 의결·집행기관이다.

②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최고위원 5명

③최고위원회의 의장은 당대표로 한다.

제27조(기능과 권한) 최고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2. 당대회와 의원총회의 소집 요구
3. 당규의 제정과 개정
4. 주요당직자, 상설위원회 위원 등 임명에 대한 협의
5. 공천관리위원장 및 위원 임명에 대한 의결
6. 공직선거후보자, 시·도당위원장 승인에 관한 의결
7. 당 예산 및 결산과 회계감사에 대한 의결
8.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결
9.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한 권한

제28조(소집·의결) ①최고위원회의는 주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최고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 당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③최고위원회의 안건 준비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업무는 사무총장이 수행한다.

제4절 중앙당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29조(중앙당 상설위원회) ①중앙당에 다음 각 호의 상설위원회를 둔다.

1. 윤리위원회
2. 여성위원회
3. 노인위원회

4. 청년·대학생위원회
5. 장애인위원회
6. 노동·직능위원회

②중앙당 상설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당무 운영 상 필요한 경우 당대표는 제1항의 상설위원회 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각 상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0조(윤리위원회) ①포상과 징계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 상설위원회로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윤리강령, 윤리규칙 등의 심의 및 제·개정
2.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 처분 심의·의결
3.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와 기관·기구에 대한 표창의 심의·의결
4. 기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인사 사항

제31조(청년·여성의 정치참여확대) ①당대표는 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인재의 발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당내 여성·청년발전기금을 구성·운영한다.

②당대표는 여성·청년 등의 신진 정치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내 정치교육과정을 둘 수 있다.

제32조(특별위원회) ①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절 사무처(당무집행조직)

제33조(구성)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당사무처, 시·도당에 시·도

당사무처를 둔다.

제34조(당무집행조직) ①사무총장은 당의 전략·조직·홍보·재정·법률 업무를 총괄하며, 사무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전략·조직·홍보·재정·법률 등 분야별로 담당 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당대표 직속으로 대변인을 둔다.

③사무총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항 조직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사무총장과 대변인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본조 제1항의 분야별 담당 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⑤중앙당사무처에 총무재정국, 전략기획조정국, 조직국, 홍보국 등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부서를 둘 수 있다.

⑥그 밖의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5조(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 ①사무처당직자에 대한 인사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사무처당직자는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후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과 부서별 기능, 복무 및 사무처당직자 임면절차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절 정책위원회

제36조(지위와 구성) ①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정책위원회는 당 소속 국회의원과 원외인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원외인사는 당대표가 정책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37조(기능과 권한)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과 권한을 갖는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연구·심의 및 입안

2. 당 정책 및 각급 선거공약의 개발
3. 법률안 등 국회에 제출되는 의안의 심의
4. 당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당·정간의 협의 및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대안제시
5. 정책홍보 등 정책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사항

- 제38조(정책위원회 의장 등)** ①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정책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③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부의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정책위원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의장,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7절 정치연수원

- 제39조(정치연수원)** ①당원의 정치역량 함양과 시민정치교육을 위하여 정치연수원을 둘 수 있다.
 ②정치연수원에 원장 1명과 부원장 약간 명을 두며, 정치연수원 원장과 부원장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정치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절 정책연구원

- 제40조(정책연구원)** ①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원을 설치·운영한다.
 ②정책연구원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연구소의 장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연구소이사회에 승인을 받는다.
 ③정책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장 시·도당

제9절 시·도당대회(지방조직)

제41조(시·도당의 창당·개편·해산) 시·도당의 창당·개편·해산은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취소 사유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2조(시·도당대회의 구성) ①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시·도당대회를 두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시·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2. 관할 시·도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3.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4.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당원

②시·도당대회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3조(기능과 권한) ①시·도당대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대회 대의원의 선출
2. 시·도당 위원장 선출
3.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부의하는 안건처리
4. 최고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건처리
5. 기타 시·도당의 주요 안건에 관한 심의·의결

②시·도당대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0절 시·도당 운영위원회

제44조(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시·도당대회의 수임기관으로서 시·도당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시·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2. 관할 시·도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3.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4. 시·도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②시·도당 운영위원회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5조(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기능)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당의 주요 당무와 정책의 심의·처리
2. 시·도당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3. 시·도당의 당직인사에 관한 심의·처리
4. 시·도당 윤리위원회의 구성
5. 시·도당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시·도당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의결
6. 중앙당이 위임한 사항의 처리
7. 기타 시·도당의 당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절 시·도당위원장과 집행기구

제46조(시·도당위원장) ①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시·도당을 통할한다.

②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④시·도당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사무처 등) ①시·도당에 사무처를 둔다.

②시·도당에 상설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시·도당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장 원내기구

제12절 의원총회

제48조(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제49조(기능과 권한) ①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당의 일상적 원내 활동 대책의 심의·의결
2. 당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주요정책 및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과 의안의 심의·의결
3. 원내대표의 선출
4. 정당법 제33조에 규정된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5. 최고위원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6. 당헌 또는 당규가 정하는 사항
7. 기타 원내 대책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②그 밖에 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0조(의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부대표 중 연장자의 순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제51조(소집) ①의원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또는 최고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소집 목적과 구체적인 안건을 명시하여 의원총회 개의 전까지 소속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2조(회의) ①의원총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 또는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장은 의원총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안건을 추가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관련분야 의견수렴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토론, 패널토론, 청문회 등 다양한 토론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53조(의결) ①의원총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국회의원 제명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와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이 비밀투표를 요구할 경우에는 비밀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제13절 원내대표

제54조(선출 및 임기) ①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5조(지위와 권한) ①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을 가지며, 원내 업무를 통할한다.

②원내대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위원회의 주재
2.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배정
3.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추천과 임명
4. 기타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③제1항 제2호의 권한행사 시에는 정책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배정한다.

④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 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원내대표가 궐위된 경우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원내수석부대표, 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제56조(원내부대표 등) ①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해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하여 명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②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가 추천하여 의원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57조(원내대책회의) ①원내 활동에 관한 당의 주요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둔다.

②원내대책회의는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으로 구성한다.
- ③원내대책회의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맡는다.
- ④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장 공직후보자의 선출

제14절 공직후보자 추천 기구

- 제58조(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①공정하고 민주적인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를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④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⑤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후보자 추천에 대한 공모
 2. 후보자에 대한 심사 또는 선정
 3.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관리
- ⑥ 후보자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추천한다.
- ⑦ 당대표 및 최고위원은 공천관리위원장 및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 ⑧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공천 신청자의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5절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 제59조(후보자 추천)** ①당은 공직선거 후보자를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당대표 추천이 확정된 후보자이더라도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명백한 도덕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③구체적인 추천관리방식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60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 ①대통령후보자는 경선으로 선출한다.

②대통령후보자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20일까지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대통령후보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다만, 제76조 비상대책위원장 및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④대통령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업무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⑤경선 절차와 방법 등 후보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1조(대통령후보자의 지위) ①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후보자는 당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당무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62조(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추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한 업무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제63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업무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제64조(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한 업무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등 상당

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65조(비례대표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 비례대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선출과 관련한 업무는 해당 시·도당이 수행하고, 후보자 추천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16절 선거대책기구

제66조(선거기획단) ①공직선거 준비를 위하여 선거대책기구 설치 전에 선거기획단을 설치 할 수 있다.

②선거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7조(선거대책기구) ①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대책기구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1.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2. 시·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②선거대책기구의 설치시기,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 회계

제68조(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69조(예산결산위원회) ①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심의·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예산결산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③예산결산위원회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④기타 예산결산위원회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0조(회계감사) ①예산결산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속 각 기관의 예산 집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예산·결산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외부의 회계전문가 1명을 회계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71조(국고보조금의 회계보고) 국고보조금의 회계내역은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를 받은 후에 그 감사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8장 당헌개정

제72조(당헌 개정안의 발의) 당헌 개정안은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당대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된다.

제73조(의결절차) ①당대회 의장은 당헌 개정안의 발의가 있을 경우 당대회 개최일 전 7일까지 공고하고 당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당헌 개정은 당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4조(개정당헌의 공포) 당헌 개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대표는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75조(당규의 제·개정) 당규의 제·개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9장 보칙

제76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당대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당이 해산하는 등의 사유로 소멸하였을 경우,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최고위원회가 설치한 수입기구에서 청산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시·도

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시·도당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제77조(대표자 변경과 합당시 관련서류와 인장의 인계)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시·도당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관련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된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78조(비상대책위원회) ①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 과반 이상이 궐위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상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공동위원장을 포함한다) 등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대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의는 즉시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⑤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되어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79조(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는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2024. 3. 3.,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2024년 3월 3일 창당대회에서 채택 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대 당대표, 최고위원 등 최고위원회의 구성원 선출·임명·임기에 관한 특례) ① 제18조,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초대 당대표는 창당대회에서 합의 추대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②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초대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제18조 및 제22조,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본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당대표 및 본조 제2항에 따라 임명된 최고위원 등 초대 최고위원회의 구성원의 임기는 2024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④제23조에도 불구하고, 본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당대표 궐위 시 최고위원 중 호선으로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한다.

⑤제24조에도 불구하고, 본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당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고위원 호선으로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초대 최고위원회의 당대회 권한 행사에 관한 특례)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72조, 제73조, 제75조에도 불구하고, 당대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2024년 5월 31일까지 최고위원회의가 당대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4조(위임) 당규가 제정되지 않은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활한 당무 집행을 위하여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세부 사항을 결정·집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관련 법률과 당헌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